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저출생극복본부(구 여성아동정책관) 종합감사 －

2024. 7.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통보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계	5건	1	2	2	1	1,075	0	0	0
1	●●●●과 (구 ○○○○○○○)	법인카드 관련 업무 부적정		1						
2	☆☆☆☆과 (구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정산 부적정			1					
3	☆☆☆☆과 (구 ○○○○○○○)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 관리 부적정	1							
4	●●●●과 (구 ○○○○○○○)	FFFF FFFF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			1					
5	△△△△과 (구 ○○○○○○○)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처리 소홀		1		1	1,075			

2. 처분요구일람표

1. 법인카드 관련 업무 부적정 (시정)	1
2.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정산 부적정 (주의)	3
3.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 관리 부적정 (통보) ...	5
4. FFFF FFFF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 (주의)	7
5.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처리 소홀 (시정)	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관련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구 ○○○○○○○○)
내 용

●●●●과(구 ○○○○○○○○)에서는 법인카드 사용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법인카드 이용대금 입금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구 ○○○○○○○○)에서는 법인카드 이용대금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하나, 결제일까지 입금 조치하지 않고 지연 입금하여 [표]와 같이 5건, 231원의 연체료를 발생시켰다.

[표] 신용카드 연체내역

-내용 생략-

2.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세입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2023년 하반기 이자수입 세입조치”(♡♡♡♡♡-AAAAA호) 공문을 발송하여 각 부서에서 계좌별 발생이자를 확인하고, 보통예금 이자(BC카드 계좌 등)는 2023.12.28.까지 반드시 세입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과(구 ○○○○○○○)에서는 법인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연도 내 세입 조치 했어야 했으나, 2023.12.24. 발생한 2023년도 하반기 이자 13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구 ○○○○○○○)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130원을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구 ○○○○○○○○)
내 용

☆☆☆☆☆과(구 ●●●●정책관)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022년 BBB BBBB BBBB 사업을 아래 [표1] 과 같이 (재)■■■■ ■■■■■ ■■■■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표1] 2022년 BBB BBBB BBBB사업 현황
-내용 생략-

BBB BBBB BBBB 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대상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를 협약서 및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교부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률과 협약내용,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 정산액¹⁾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은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1)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BB BBBB BBBB의 위탁사업자인 (재)■■■■ ■■■■■■■■은 계약 상대방에게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선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 ■■■■■■■■이 아래 [표2]와 같이 (사)◁◁◁◁◁◁◁◁에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 보증서와 선금 정산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선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2] 선금 지급현황

-내용 생략-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과(구 ●●●●정책관)에서는 정산검사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구 ○○○○○○○○)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통 보 요 구

제 목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구 ○○○○○○○○)
내 용

☆☆☆☆☆과(구 ●●●●●정책관)에서는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를 제정 및 관리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CCCCCCCCCC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DDDDDDD를 설치하고자 2021.06.30.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 제7조(우선보호조치)는 도지사는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 ○○○○○○-●●●호 “CCCCCCCCC · DDDDDDD 구성 및 개최현황 제출 추가사항 안내” 공문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

CCCCCCCCC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조치 조항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점검하고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과(구 ●●●●정책관)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의 우선 보호조치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구 ○○○○○○○○)은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CCCC CCCCCCCCCC CC C CCC CC 조례」의 우선 보호조치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FFFF FFFF 민간위탁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구 ○○○○○○○○)
내 용

●●●●과(구 ○○○○○○○○)에서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표1] 과 같이 FFFF FFFF 운영을 EEEE EEEE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1] FFFF FFFF 위탁운영 현황

-내용 생략-

「FFFFF FFFF 위탁운영 계약」 제10조(운영비 보조 및 관리 등)는 EEEE EEEE은 매분기 익월 10일한 위탁운영비 전분기 정산서 및 해당분기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상북도지사는 적정여부를 검토·정산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계약 제11조(예산 및 사업계획 제출 등)는 FFFF 운영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계약 제12조(결산보고)는 EEEE EEEE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세입·세출결산서,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기타 비용 명세서, 사업 실적보고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구 ○○○○○○○)에서는 FFFFF FFFF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분기 정산서, 예산서,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구 ○○○○○○○)에서는 분기 정산서, 예산서, 결산보고서를 아래 [표2] 와 같이 기한 내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는 등 위탁사업 관리에 소홀하였다.

[표2] FFFF FFFF 예산서 등 제출현황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과장(구 ○○○○○○○)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정산업무 처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구○○○○○○○○)
내 용

△△△△과(구 ○○○○○○○○)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1년 GGGGGG GGG에 [표1]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GGGGGGGG 보조금 교부 현황

-내용 생략-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구 ○○○○○○○○)에서는 보조사업자인 GGGGGGGGGG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적정히 검토하여 당초 사업계획 대로 자부담을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당초 집행비율에 맞게 집행하였다면 별도 조치 없이 정산처리 하고 당초 사업계획 대비 자부담 집행율이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 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한 후 교부된 지방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제출된 실적보고서 상 자부담 집행액과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 집행액 기준으로 정산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 잔액만을 반납받고 낮은 자부담 집행율에 따른 차액 1,074,820원을 반환받지 않고 정산완료 처리하였다.

[표 2] 보조사업 정산 재확정 내역
-내용 생략-

조치할 사항 △△△△과장(구 ○○○○○○○○)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가 반납액 1,074,820원을 반납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정)